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7. 22.(월) 11:00, (지면) 2024. 7. 23.(화) 조간

배포 2024. 7. 22.(월) 06:00

#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

-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접수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7월23일(화)부터 25일(목)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(https://lems.seaman.or.kr)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.

선박안전관리사( $1\sim3$ 급)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,  $1\sim2$ 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 $^*$ 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.

\* 1급: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2급: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

자격시험\*은 8월 10일(토) 필기시험과 8월 17일(토) 면접(1·2급만 해당)으로 진행된다. 필기시험 과목은 △선박관계법규, △해사안전관리론, △해사안전 경영론, △선박자원관리론, △선택과목(항해·기관·산업안전관리 중 택1)이며, 3급 이상의 항해사·기관사,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 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\* 필기 △(부산) 해양수산연수원(본원), △(인천) 인하공업전문대, △(목포) 해양대 면접 △(부산) 해양수산연수원(본원), △(인천·목포) 해양수산연수원(인천·목포 분원)

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, 이후 면접(1·2급만 해당)을 거쳐 8월 19일(월)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. 참고로,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\*이 자격증을 취득했다.

- \* 시험결과(합격률): △1급: 99명(32.4%), △2급: 112명(22.5%), △3급: 556명(37.7%)
- \*\* 국제항해 여객선,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,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
- ※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확인 또는 연수원 능력평가팀(051-620-5833/5851) 문의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이창용 (044-200-5810)
<총괄>	해사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윤광상 (044-200-5818)
<시험운영>	한국해양수산연수원	책임자	팀 장	박영숙 (051-620-5830)
	능력평가팀	담당자	교 수	김기선 (051-620-5802)







## 참고 1

##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개요

#### □ 추진배경

- 선박의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<sup>\*</sup> 자격제도 신설(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장제3절)
  - \* △안전관리체제 수립·시행, △선박 안전관리 점검·지도, △해양사고 예방 지도·조언 등 수행
-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'24.1.5.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선임<sup>\*</sup>필요
  - \* '231.5.~'24.1.5. 기간 중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된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
  - ※ '24.1.5.기준으로 안전관리(책임)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등은 특례 교육·평가 ('24~'26, 시행예정)로 자격취득 가능(「해상교통안전법(법률 제19725호)」 부칙 제5조)

#### □ 시험개요

- (위탁·운영기관) 한국해양수산연수원(문의 : 051-620-5833 / 5851)
- (시험주기) 연 1회 실시 원칙이나 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\* 가능
- (**자격등급**) 1·2·3급(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)
- (**방법/과목**) 필기\*·면접(1·2급) / △선박관계법규, △해사안전관리론, △해사 안전경영론, △선박자원관리론, △선택과목\*\*(항해, 기관, 산업안전관리 중 택1)
  - \* 1급은 객관식·주관식, 2·3급은 객관식
  - \*\* 면제대상: 3급 이상 항해사·기관사 면허,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
- (**합격기준**)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△**필기** :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, △**면접** : 60점 이상

### □ 시험일정(안)



## 참고 2

##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자격기준 등

#### □ **안전관리(책임)자 자격기준**(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2)

구분	외항선 사업장	내항선 사업장
안전관리 책임자	• 선박안전관리사 1급 • 선박안전관리사 2급+ 안전관리자 경력(12년 이상)	•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 • 선박안전관리사 3급+ 안전관리자 경력(6년이상)
안전 관리자	•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 • 선박안전관리사 3급+ 선박안전 관련 업무 경력(6년 이상)	•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

## □ **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**(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」 별표 7)

선박안전관리사 등급	자격시험 응시자격		
1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•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		
	• 2급 이상의 해기사(항해, 기관, 운항)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		
2.⊐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•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		
2급	• 「선박직원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,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		
3급	• 제한 없음		

#### 비고

- 1. "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"란 선박운항, 선박검사, 선박안전·보안관리, 조선,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를 말함
- 2.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이 포함되며, 승선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
- 3. 항해사, 기관사 또는 운항사에는 「선박직원법」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직종·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
- 4. 항해사 면허 중 한정면허는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 면허만 해당

## □ **자격시험 과목 및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**(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」 별표 9)

시험	과목 내용		
과목	시국 네S		
선박관계 법규	<ul> <li>국내법: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「선원법」,「선박직원법」,「선박안전법」,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,「해운법」,「해사안전기본법」,「해상교통안전법」</li> <li>국제협약: 「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(SOLAS)」,「선박으로 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(MARPOL)」,「선원의 훈련,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(STCW)」,「국제 만재흘수선 협약(LL)」,「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(TONNAGE)」,「해사노동협약(MLC)」</li> </ul>		
해사안전 관리론	•정부의 대표적인 사고예방 기법인 항만국통제제도 및 해사안전감독, 안전관리·비상대응 절차, 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, 해양 관할권 및 항행권과 관련한 내용		
해사안전 경영론	• 안전에 대한 법적책임, 안전정보의 확인, 안전경영정책의 수립·계획· 측정·검사, 안전조직 구성·운영, 안전경영정책 환류와 관련한 내용		
선박자원 관리론	• 인적자원관리, 과업 및 업무량 관리 적용 능력, 의사소통, 의사결정기술, 선박기기, 선박구조, 선박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내용		
선택과목 (택1)	• 항해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항해사 시험과목 중 '항해'와 '상선전문' 과목) • 기관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기관사 시험과목 중 '기관 (1)'과 '직무일반' 과목) • 산업안전관리(산업안전 관련 법령,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)		

#### ※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:

- 3급 이상 항해사(한정면허는 상선면허만 해당) : 항해과목 면제
- 3급 이상 기관사 : 기관과목 면제
- 산업안전기사·산업안전지도사 : 산업안전관리 과목 면제